THE EST

평택 지제역 | **동문 디 이스트** 5단지

평택 지제역 | 동문 디 이스트 5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택전시관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다만,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및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계약 체결시, 주택전시관 방문 등은 정부 방침 및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운영 방침 (관람 인원 · 시간 제한 등) 및 운영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http://pt-dmtheest.co.kr)를 확인 후 문의 사항은 평택 지제역 디 이스트(5단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계약 기간 내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이 가능합니다.
  ※ 각 당첨자별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평택 지제역 디 이스트(5단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http://pt-dmtheest.co.kr)
-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자세한 서류 제출 사항은 평택 지제역 디 이스트(5단지) 고객센터(031-651-7733)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①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③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②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④ 기타 사업 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안드로이드 | 아이폰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는 2021. 07. 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9. 23.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 확인" 등 청약제한사항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청약제한사항을 직접 확인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제한(LTV, DTI 등), 청약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거주 '성년자'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❶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❷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❸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시 평택시 6개월 이상 (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 신청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분리하였으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 · 초본상 거주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지역의 의무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의 주택 소유 예외사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 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 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 계약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 지급일
      ※ "공급계약 - 준공후 - 분양권(입주권)", "전매 - 준공후 -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 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에는 '소형 · 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 과열 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 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의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5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t-dmthees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 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접수유형과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가점 · 추첨제 공급비율 - 85㎡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 · 손녀를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단,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 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세대의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9.23.)'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부적격 통보일로 7일의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해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 공급 신청(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신청할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2020년 4월 16일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09.20.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부적격 당첨자(또는 계약자)의 당첨(또는 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세대에 대한 임의공급/입주자모집공고 재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본 아파트는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재한기간 (특별공급/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2021.01.0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분양 계약 체결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전자 수입 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청약 과열 지역)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 및 당첨자선정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합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해당) (평택시 6개월 이상)	일반공급 1순위(기타) (평택시 6개월 미만, 전국)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1.09.23.(목)	2021.10.05.(화)	2021.10.06.(수)	2021.10.07.(목)	2021.10.08.(금)	2021.10.15.(금)	2021.10.16.(토)~2021.10.23.(토)	2021.10.26.(화)~2021.10.30.(토)
비고	청약 자격조건 등 판단기준일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10:00 ~ 17:00 (사전 방문예약제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10:00 ~ 16:00
장소	문화일보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5단지) 주택전시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0-1번지) *사전예약자도 홈페이지 확인 후 방문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은 기존 전용면적+주거 공용 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 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법령이 우선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40343호(2021.09.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A-5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7층, 12개동 총 7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총 370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7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48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22세대, 생애 최초 특별공급 52세대 포함]
■ 주차대수 : 총 945대(아파트 : 942대 / 근린생활시설 : 3대)
■ 입주시기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1000707	01	084.9942A	84A	84.9942	27.6860	112.6802	51.4342	164.1144	56.7298	562	59	56	112	17	40	284	278	20
		02	084.9366B	84B	84.9366	27.4542	112.3908	51.3994	163.7902	56.6913	148	15	14	30	4	10	73	75	10
		03	084.9882C	84C	84.9882	28.1931	113.1813	51.4306	164.6119	56.7258	18	0	2	3	1	1	7	11	5
		04	084.9882D	84D	84.9882	28.1931	113.1813	51.4306	164.6119	56.7258	13	0	2	3	0	1	6	7	4
합 계											741	74	74	148	22	52	370	371	39

•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 공용 부분도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 공용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 · 층 · 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동, 라인 구분	층 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중도금1차 '22. 03. 15	중도금2차 '22. 07. 15	중도금3차 '22. 11. 15	중도금4차 '23. 03. 15	중도금5차 '23. 07. 17	중도금6차 '23. 11. 15	잔금(30%) 입주 지정일
84A	501, 504, 507, 511동 1,2,3,4호 502, 503, 508, 510동 1호 512동 1,2호	1층	3	125,235,000	303,765,000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2층	20	128,738,000	312,262,000	441,0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3층	20	131,658,000	319,342,000	451,0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4층	20	133,701,000	324,299,000	458,0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37,400,000
		5층이상	419	135,161,000	327,839,000	463,0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502, 508, 509, 510동 3호 505, 506동 1호	5층이상	61	133,993,000	325,007,000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512동 3호	5층이상	19	132,533,000	321,467,000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84B	502, 503, 508, 510동 2호 505, 506동 2,3호 509동 1,2호	1층	4	124,068,000	300,932,000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2층	10	127,863,000	310,137,000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3층	10	130,490,000	316,510,000	447,0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34,100,000
		4층	10	132,825,000	322,175,000	455,0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5층이상	114	134,285,000	325,715,000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84C	503, 504동 1호	2층	2	131,074,000	317,926,000	449,0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4층	2	136,037,000	329,963,000	466,0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39,800,000
	502, 508, 509, 510동 3호 505,506동 1호	2층	6	129,906,000	315,094,000	445,0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4층	6	134,869,000	327,131,000	462,0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512동 3호	2층	1	128,447,000	311,553,000	440,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4층	1	133,409,000	323,591,000	457,0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84D	503, 504동 1호	1층	1	127,279,000	308,721,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3층	2	133,993,000	325,007,000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502, 508, 509, 510동 3호 505,506동 1호	1층	3	126,111,000	305,889,000	432,0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3층	6	132,825,000	322,175,000	455,0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512동 3호	3층	1	131,366,000	318,634,000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 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 신용 보증 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선납할인은 중도금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지연이자는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본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급금액(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84A	84B	84C	84D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8	2	0	0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8	2	0	0	10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9	2	0	0	11	
	중소기업 근로자		8	2	0	0	10	
	장애인	경기도	10	3	0	0	13	33
		서울특별시	8	2	0	0	10	
		인천광역시	8	2	0	0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8	7	1	1	37	74
	기타 지역 거주자(50%)		28	7	1	1	37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용85㎡이하 주택건설량의 20%범위)			112	30	3	3	14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전체 건설량의 3% 범위)			17	4	1	0	22	
생애최초 특별공급(85㎡이하 건설량의 7% 범위)			40	10	1	1	52	
합 계			284	73	7	6	370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우선 공급 단수 처리 기준 : 소수점 이하 절상[(예시) 9세대 공급시 : 우선 공급(70%) - 7세대 배정, 일반공급(30%) - 2세대 배정]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 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유형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소형 · 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입주자 저축 등 청약 자격 요건	• 특별공급 유형별 입주자저축 등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 일반(기관추천)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다자녀가구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신혼부부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노부모부양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생애최초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청약 과열 지역 :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 하시기 바람(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 바랍니다.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과 동 · 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이후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청약 신청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 신청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분리세대 포함)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공급 세대에 미달한 경우, 잔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소명기간(7일) 이내에 부적격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4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미청약시 당첨자 선정(동 · 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당첨 및 계약 불가]
※ 소형 ·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해당 추천 기관	연락처
장애인	경기도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031-8008-4329
	인천시	인천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032-440-2966
	서울시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 지원과	02-2133-7462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 남부 보훈청 복지과	031-259-1783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선정원칙 : 추천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거 '추천대상자'로 사업 주체에 선정 · 통보한 자(사업 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로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시 당첨자로 확정합니다. (단,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청약 제한 사항 및 주택 소유 현황을 전산 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서류로 결격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예비대상자 유의사항 : 추천기관에서 선정 · 추첨된 '예비 대상자(사업 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도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청약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형의 특별공급 대상 세대 중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미달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4세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자
• 입주자 저축 등 청약 자격 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 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 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 6개월 이상 (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경기도 우선 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1)+(2)+(3)+(4)+(5)+(6)		
(1)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2) 영유아 자녀수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이상 ~ 10년 미만	15	
		1년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시 · 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청약자가 성년자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을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5년이상 ~ 10년 미만	10	
		1년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48세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7년(전 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 기간 중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 등 청약 자격 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적용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우선공급 -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 상위소득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합산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신청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 복무중이어서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 복무 확인서와 의료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 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 신고일 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주민 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상 입양 신고일이 적용) 등으로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2세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청약1순위 자격요건 충족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 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52세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 이혼자녀 제외)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 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 최초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　　※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제3항에 따른 가구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 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구당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 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직 등의 경우 소득 산정 방법
①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 (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함.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 평균소득을 추정함.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 증명서를 징구하여 월 평균소득을 추정함.
④ 상기 ②, ③에 따라 월 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소득을 추정함.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 복무확인서와 의료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 금액 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동일 기준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 공급 소득 기준 또는 일반공급 소득 기준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②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청약 과열지역으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1순위 청약 접수 일정 분리,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공급비율 - 85㎡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됩니다.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거주 구분	청약순위	자격요건 및 안내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1.03.23.이전부터 연속거주)	1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필수 자격요건 (아래 ①~⑤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 2년 이상　② 입주자저축 인정 금액 : 입주자 저축별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 기준금액(납입 인정금액) 충족 ③ 세대 구성원 : 세대주　④ 주택 소유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포함) ⑤ 당첨 사실 :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는 자(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포함)
■ 기타지역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및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2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구성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별 예치금액(납입인정금액) 및 가입기간 충족요건**

구분	충족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예치금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기간 경과
청약부금	매월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의 예치 기준금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85㎡이하 주택형만 청약신청 가능)

※ 기타 입주자저축 안내　• 청약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청약부금 : 85㎡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 · 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습니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청약자 본인은 제외) • 적용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1)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 · 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2) 무주택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나) 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 (예: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 라)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 마)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바)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 3)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다)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 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단,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6호를 적용하지 않음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특별공급 제외)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본인이 동시 청약(1인 1건만 신청 가능)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 2 순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 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 신청 자격 변경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가능
　* 청약부금은 85㎡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청약 가능　*세대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시 자격 충족
- 청약 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시 청약가능(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단독지분을 공유로 상속받은 경우와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만큼의 면적으로 산정함.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 ·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 · 가격으로 산정함.
10.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주택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하며 1:1 이상은 경쟁 발생으로 봄)
　　- 청약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 세대 추가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 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 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 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계약②	잔여세대 미분양(가)	미계약(나)	잔여세대 추가계약①	주택소유 판단
A유형 (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소유
B유형 (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소유 / (나) 주택소유
C유형 (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	② 주택소유 / (가), (나) 주택소유 아님
D유형 (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	② 주택소유 / (가) 주택소유 아님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 계약 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 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 소유로 간주함.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 ·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 · 저가 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 · 저가 주택 등 '특례 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경합	주택수	적용기준
규칙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소형 · 저가	1	소형 · 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5호(20㎡ 이하) ⊕ 소형 · 저가	2	5호 미적용 및 소형 · 저가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 ⊕ 제5호(20㎡이하)	1	5호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0	모두 적용
규칙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소형 · 저가	1	소형 · 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유형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300%까지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부여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주택형별 모집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 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세대수의 75% :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
② 나머지 25%의 세대(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세대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조건 승낙이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5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t-dmtheest.co.kr)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제한사항 및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 신청시 청약자가 입력(선택)한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 소유 현황, 청약 제한사항 등을 전산 검색하여 당첨자 또는 세대 구성원의 청약 제한사항,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제한사항이 발생하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또한, 당첨(계약)취소 세대는 공급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IV　청약일정, 신청방법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및 접수 시간	신청 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0.05.(화) (인터넷 : 청약Home 08:00~17:30) (정보취약자 : 주택전시관 10:00~14:00)	■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 :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5단지) 주택전시관(평택시 세교동10-1)
일반공급	1순위(해당)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거주자	2021.10.06.(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1순위(기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지역 거주자	2021.10.07.(목) 08:00~17:30	
	2순위	전국 지역 거주자	2021.10.08.(금) 08:00~17:3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 시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 신청자의 청약 신청접수일을 분리하였으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1순위(해당) 접수일에 청약 가능 /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전국지역 거주자 : 1순위(기타) 접수일에만 청약가능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 전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청약가점 계산", "청약가상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청약 예정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든은행 청약자)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 · 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 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 방문 청약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방문청약 방법	• 특별공급 접수일에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접수 가능시간 : 10:00 ~ 14:00)	• 일반공급 접수일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접수 (접수 가능시간 : 09:00 ~ 16:00)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참고) ※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 접수시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자격 확인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 작성시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V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10.15.(금) •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의 동 · 호수 및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0.15.(금) ~ 2021.10.24.(일) - 10일간 조회 가능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 사항 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0.15.(금)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제출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제출기간,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2021.10.16(토) ~ 2021.10.23(토) 10:00 ~ 17:00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5단지) 주택전시관(평택시 세교동10-1) *사전방문예약제로 접수 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 예비입주자(특별/일반)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입주대상자는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기간 이내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누락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 · 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기관추천대상자는 필요 없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 관계 증명서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출산한 경우 출산 증명서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	출산 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내 비치)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 관계 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관계 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요건 확인서 (주택전시관 내 비치)
		○	임신진단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출산한 경우 출산 증명서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 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내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장영업자가 아닌 경우(주택전시관내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증빙용 ※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 관계 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구에 관한 사실 증명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 관계 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요건 확인서 (주택전시관내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내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 확인(배우자만 있고 미혼자녀가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1년 이상 연속 등재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주택전시관내 비치)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장소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아래 ① ~ ③ 중 해당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신분증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택전시관내 비치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 · 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